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70243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17.02.15.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5.01.20.

hrku1004@hanmail.net

[비어첸]

정 보 공 개 서

㈜케이더블유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케이더블유프랜차이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A동 14층 1401호(상대원동, 성남 우

림라이온스밸리)

[전화 :031.717.5923] [팩스 :031.718.592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1899.5937]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별첨 서류
-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케이더블유프랜차이즈 영업표지		(주)케이더블유프랜차이즈 영업표지 비어첸 외3		어첸 외3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A동 1			14층 14	01호(상대원동,
' -	성남 우림 라이온스밸리)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02.13	2015.02.13	박건욱	1899-5937 031		031-718-5923
법인등록번호	134511-0254025	사업자등록번호		54	7-88-00040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바거ㅇ/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A동			
대표이사	박건욱/	HIOLEH OLD	1401호(상	대원동, 성남 우림 리	이온스밸리)	
(임원)	(주)케이더블유	비어첸 외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프랜차이즈		박건욱	1899-5937	031-718-592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치증저 /		경기도 성남시 중	중원구 사기막골로45년	번길 14, A동 14층	
사내이사	최효정/		1401호(상	대원동, 성남 우림 리	이온스밸리)	
(임원)	(주)케이더블유	비어첸 외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프랜차이즈		박건욱	1899-5937	031-718-5923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경기도 성님	주 소 낚시 중원구 사기막골	로 45번길 14,	
관계	이름/상호 (주)에이치엔디	-		<u>'</u>		
관계계열회사	-	영업표지 만타스시31		낚시 중원구 사기막골		
-	(주)에이치엔디	-	A1513호(성	나시 중원구 사기막골. 상대원동, 성남우림 리	아온스밸리)	
-	(주)에이치엔디	만타스시31	A1513호(성 대표자	사 중원구 사기막골 상대원동, 성남우림 리 대표전화번호	아온스밸리) 대표팩스번호	
-	(주)에이치엔디 푸드	만타스시31	A1513호(선 대표자 박건욱	· 사시 중원구 사기막골 상대원동, 성남우림 리 대표전화번호 1899-5937	아온스밸리) 대표팩스번호 031-8018-2220	
계열회사	(주)에이치엔디 푸드 법인등록번호 이름/상호	만타스시31 124411	A1513호(선 대표자 박건욱 I-0264036	하시 중원구 사기막골 상대원동, 성남우림 리 대표전화번호 1899-5937 사업자등록번호	아오스밸리) 대표팩스번호 031-8018-2220 766-87-01717	
계열회사	(주)에이치엔디 푸드 법인등록번호	만타스시31 124411	A1513호(전 대표자 박건욱 I-0264036 경기도 성남시 경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아오스밸리) 대표팩스번호 031-8018-2220 766-87-01717 번길 14, A동 18층	

			박건욱	1899-5937	031-8018-2220	
			김종근	1033-3331	031-0010-2220	
	법인등록번호	13111	1-0670222	사업자등록번호	588-87-0291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	중원구 사기막골로45'	번길 14, A동 14층	
	(주)엘피케이컴	투게더피치	01호(상	대원동, 성남우림라이	온스밸리)	
계열회사	퍼니	구세니퍼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건욱	1899-5937	031-8018-2220	
	법인등록번호	13111	1-0696145	사업자등록번호	455-86-0296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경	5원구 사기막골로45병	번길 14, 2차에이동	
	(주)좋은사람들	우마주	1401호(상	대원동, 성남 우림 리	이온스밸리)	
계열회사		구의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황정해	1899-5937	031-8018-2220	
	법인등록번호	13111	1-0750298	사업자등록번호	234-86-0357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	당구 판교역로192번	길 16, 806호(삼평동,	
				판교타워)		
임원	박건욱	철뚝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재원, 하태용,	1899-5937	031-718-5923	
			최규혜 1033 3331 031 710		031 710 332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01 01	좋은사람들	ᆼᇚᆝᄌ	경기도 용인시 기	흥구 동백8로131번길	9, (비공개)	
임원	/박건욱	우마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 , , ,		박건욱	1899-5937	031-718-592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 ·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태풍에 프앤비	『부뚜막치킨』	2021.10.26.	경기도 부천시 서촌로32번길 21, 1층(송내동)	김태환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백년가	『백년가 짬뽕』	2022.12.1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888, 1층	정영국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양도함	(주)엘피케 이컴퍼니	『투피치』	2023.09.1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A동 14층 01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박건욱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비어첸』	
상 호	『비어첸』 <u>점</u>	
	비어첸	등록번호 41-0385465-0000
상표(서비스표)	BEERCHE	-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236,860	2,077,882	158,977	1,126,150	84,411	69,989
2022년	2,026,483	1,803,480	223,003	1,260,875	61,549	64,025
2023년	1,945,576	1,697,803	247,772	1,425,168	58,436	24,769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l 큰	취지이		사업경력	
이름	현 직위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대표이사	2015.02.13 ~ 현재	(주)케이더블유프랜차이즈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대표	2020.09.01 ~ 2023.03	철뚝길에프씨 공동대표	회사업무 총괄
	대표이사 2020.04.13 ~ 현재		㈜에이치엔디푸드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박건욱	대표이사	2022.04.28 ~ 현재	에이치엔케이푸드(주) 공동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대표이사 2023.02	2023.02.14 ~ 현재	(주)엘피케이컴퍼니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대표	2024.07.23 ~ 현재	좋은사람들 대표	회사업무 총괄
	사내이사	2024.10.30 ~ 현재	(주)좋은사람들 사내이사	경영지원
최효정	사내이사	2015.02.13 ~ 현재	(주)케이더블유프랜차이즈 사내이사	회사업무 관리
-,20	감사	2023.02.14. ~ 현재	(주)엘피케이컴퍼니 감사	회사업무 총괄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2023년도) 말 현재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직전년도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엄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3년 12월 31일	2	-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 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니 66이고 씨티니니.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경영	2019.11~2025.01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소담설렁탕(등록번호: -)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경영	2016.01~현재	쉐프의 부대찌개(등록번호: 20150273)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경영	2017.02~현재	비어첸(등록번호: 20170243)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1.03~2025.01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태그 1.5 커피(등록번호: -)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1.10~현재	부뚜막치킨(등록번호: 20130100296)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3.07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건강편백샤브샤브(등록번호: -)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4.01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백년가 짬뽕(등록번호: -)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3.10~현재	참솥(등록번호: 20231299)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3.09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회사에 인도함	투피치(등록번호: 20231300)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임원)	박건욱	가맹사업 경영	2020.08~2023.03	철뚝길(등록번호: 20201726)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임원)	박건욱	가맹사업 경영	2024.12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회사에 인도함	우마주(등록번호: 20241342)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에이치엔디 푸드	가맹사업 경영	2021.04~현재	만타스시 31(등록번호: 20214278)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에이치엔케이 푸드(주)	가맹사업 경영	2022.12~2025.01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길 세이로무시(등록번호: -)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컴퍼니	가맹사업 경영	2023.10~현재	투게더피치(등록번호: 20231300)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좋은사람 들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시작 예정	우마주(등록번호: 20241342)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상표 (서비스표)	권리 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자)	존속 기간 만료일
비어첸	가맹점상호로 사용	출원일 2016.05.25 등록일 2017.01.31	출원번호 41-2016-0024269 등록번호 41-0385465-0000	박건욱	존속기간:2027. 1.31. (허용기간): 가맹사업 종료 시까지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비어첸』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비어첸』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6년 11월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7년 01월)

2.『비어첸』연혁

☞『비어첸』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주)케이더블유	비이눼	HI-7J O	2016 11 성제	사기막골로45번길 14, A동 14층
프랜차이즈	비어첸	박건욱	2016. 11 ~ 현재	1401호(상대원동, 성남 우림
				라이온스밸리)

3.『비어첸』업종

영업표지	업종		
비어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주점	호프, 프리미엄비어, 카페비어	

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단 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TICH		2021.12.31			2022.12.31			2023.12.31	•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7	37	_	27	27	_	21	21	_
서울	4	4	_	2	2	_	2	2	1
부산	2	2	_	1	1	_	ı	_	-
대구	1	1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	_	-
광주	-	_	_	-	_	_	-	_	-
대전	_	_	_	_	_	_	-	_	_
울산	1	1	_	1	1	_	1	1	1
세종	_	_	_	_	_	_	-	_	_
경기	15	15	_	12	12	_	8	8	-
강원	4	4	_	2	2	_	2	2	_
충북	1	1	_	1	1	_	1	1	_

충남 전북 전남	_	_	_	1	1	_	1	1	_
전북	2	2	_	2	2	_	1	1	_
전남	1	1	_	_	_	_	_	_	_
경북	2	2	_	2	2	_	2	2	_
경남 제주	4	4	_	3	3	_	3	3	-
제주	_	_	_	_	_	_	_	_	-

- 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43	8	-	14	_	37
2022년	37	1	3	8	1	27
2023년	27	1	_	7	1	21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 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직영점 및 가맹 점의 총 수

78	사하/이르	여어ㅠ티	정보공개서	업종	가밍	l점/직영점의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입송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쉐프의 부 대찌개	20150273	외식	41/1	31/1	23/-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비어첸	20170243	외식	37/-	27/-	21/-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부뚜막치킨	201301002 96	기타 외식	12/-	10/-	10/-
가맹본부	(주)케이더블 유프랜차이즈	참솥	20231299	한식	-/-	-/-	3/-
계열회사	(주)엘피케이 컴퍼니	투게더피치	20231300	기타 외식	-/-	-/-	3/1
계열회사	(주)에이치엔 디푸드	만타스시31	20214278	일식	63/-	103/-	90/-
계열회사	(주)좋은사람 들	우마주	20241342	한식	-/-	-/-	-/-

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단위: 개/천원, 부가세미포함)

ſ		2023년	2023년 가명	냉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21	178,027	4,909	412,687	11,224	27,991	1,004	21곳 산정
서울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부산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구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인천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광주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전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세종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기	8	211,050	4,938	412,687	9,424	97,697	2,821	8곳 산정
강원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전북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전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북	2	해당없음	_	_	_	-	_	5곳 미만
경남	3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제주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가맹점인터뷰 및 포스데이터에 따른 매출액 입니다.]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 되는 가맹점이 있어 일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환산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비어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비어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1	1,496일

-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광고비	인터넷 등	연중	_	-
판촉비	_	연중	-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및 담당지점 또는 담당부서	예치기관의 소재지	예치기관의 전화번호
농협은행 용인동백역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11번길 8-1 제일프라자 2층(중동 853-2(제일프라자2층))	031-8005-5100

- 2) 가맹금 예치절차
- ☞ 귀하는 [농협은행] 전국 영업점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 및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해당 영업점에서 가맹금 입금용 에스크로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는 안내받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 귀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 관련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법」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법」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이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비어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별도 구입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14,300				(예외조건)
가맹비	11,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는 반환)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3,3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는 반환)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이수시 반환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합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금액	비고
합계	16,300	
가맹비	11,000	부가세포함
개점 전 교육비	3,3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3]쪽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비고
합계		92,488			99㎡(약30평)기준
인테리어		52,800	1,760	시공 시작 3일 전	
간판		8,800		설치 3일 전	
주방기물/집기	별첨1_1.거래	19,800		입고 3일 전	평당 66만원 오븐, 냉장고, 냉동고, 토핑테이블냉장고, 간텍기 등
의탁자 등	상대방 참고	6,600		입고 3일 전	4인기준 44만원
홍보비		3,300		개점 3일 전	배너, 메뉴판, 명함, 유니폼, 스피커앰프, 블로그체험단, 전단지 등
포스		1,188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관리 감독 준수 : 인테리어, 간판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당사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당사의 도면비, 기획관리비 대가로 3.3m² 당 금이십오만원(₩250,000 / VAT별도)을 공사 착수 전일까지 당사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 (2) 필수 구입 내역: 별첨1 일체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그 밖의 영업 신고, 어닝, 오디오, 스피커, 철거비용, 테라스 사업자 등록 발급, 전화 개설, TV 설치, 후드 실외 배관공사, 가스/소방공사, 오픈행사, 전기승압공사등, CCTV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 야 합니다.
- ※※※ 위 금액은 오픈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정확한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 →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 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 가할 수 없습니다.
- ※※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종업원	당사 및 가맹점 사업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기준은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가맹본부	330	매월 말일	반환안됨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
광고·판촉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약정서 차	촉 동의 또는 체결 이후에는 되지 않음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220	교육 실시 10일 이전			가맹점사업자 이외에 인원추가의 경우는 1인당 11만원 추가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	가맹본부가 요구시 : Ⅷ.1 외 비용 부담	-	-	-	가맹점사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별첨1_1. 거래상대 방 참고	협의		경우 변경될 용은 협의 ^성	릴 수 있으며, 하여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 지급 기일 경과 시
POS 사용료		해당없음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매장운영 전반감독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 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수시	사정에 따라
재고관리 회계처리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감독	ナベ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부담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재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재가맹비 1,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재가맹비(10년 후 신

규 가맹계약서상 가맹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거 나 원할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 사는 귀하에게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가맹사 업 양도시점 당시 최초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금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최초의 가맹계 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맹금에서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가맹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에서 최초의 계약기간 중 잔여기간의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 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귀하는 새로운 대체수단으로 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 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가)의 경우에 준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 귀하가 운영하는 『비어첸』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갱신 시 재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당사와 귀하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의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당사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의 비용은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의 종료 즉시 당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 채무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상호 및 상표, 기타 구조물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 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스템 및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매뉴얼 등을 즉 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을 넘겨 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고객이 귀하에게 선불로 결제한 금액이 있다면 고객 미사용분에 대해 귀하는 고객에게 반환을 해야 하며, 미반환 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가 고객에게 대납할 수 있으며, 대납 시 귀하는 당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계약 종료에 따른 위의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체1일당 3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계약종료 후 조치 미이행시의 위약금조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비어첸]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별첨1~별첨2 참고)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비어첸]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물품중단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문의: 가맹사업본부 (1899.5937)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 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 · 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 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물품중단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 *2회 시정요구에도 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 물구하고 시정되는 않는 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 금지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메뉴)							
상품명	권장가격(단위:원)	상품명	권장가격(단워:원)				
그릴 두마리 통닭	₩20,000	닭발	₩13,000				
그릴 함바그 & 반달피자	₩19,000	버터간장감자	₩10,000				
피자★봉골레 씨푸드 돔	₩15,000	불쭈꾸미 & 퀘사디아	₩14,000				
피자★파이어 오징어	₩15,000	오돌뼈	₩12,000				
피자★포테이토베이컨	₩15,000	치킨샐러드	₩14,000				
해물국물 떡복이	₩14,000	연어샐러드	₩14,000				
후라이드 치킨	₩15,000	쉬림프 샐러드	₩14,000				
양념 치킨	₩16,000	과일 샐러드	₩14,000				
통마늘 닭강정	₩13,000	골뱅이 무침	₩13,000 (면추가₩2,000)				
순살파닭	₩14,000	오뎅탕	₩14,000 (면추가₩2,000)				
마늘간장치킨	₩15,000	해물짬뽕	₩14,000				
어니언 치킨	₩17,000	해물누룽지탕	₩14,000				
꽃게강정	₩13,000	과일	₩15,000				
왕새우 튀김	₩13,000	노가리	₩10,000				
오징어 튀김	₩11,000	반건조 오징어	₩12,000				
쥐포 튀김	₩11,000	한치	₩12,000				
감자 튀김	₩11,000	먹태	₩10,000				
비어첸 플레이트	₩16,000	망고 과일화채	₩15,000				
그릴드 소시지	₩15,000	황도	₩12,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접충 담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요리를 판매하는 비어카페 형태의 주류가맹사업	비어첸	-	

[☞] 귀하의 영업지역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의 [비어첸]과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를 추가 입점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및 방법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지역적 특성 들을 고려하여 그 범위(반경 500m)를 지도로 표시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별도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	재조정 사유 발생 →	영업지역 변경(안)을
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 담당팀 검토 →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변동되는 경우	서면 통지 →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	가맹점사업자의	완료(신규 점포 입점

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의사동의 → 영업지역	71 ->
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	변경 완료	가능).
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비어첸』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 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비어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비어첸] 가맹점과 구분되는 점
당사의 가맹사업 브랜드	부뚜막치킨	치킨, 닭강정	[비어첸] 간판을
		· ·	사용하고 있지 않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 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	드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	출액 비중	온라?	인 판매 매출액 비중
ı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 몰	기타 온라인
	2023	100.0%	0.0%	0.0%	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 전용상품)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0%	0.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비어첸』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3]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Д 11	기 간
군 시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⑧	D-180 ~ D-90
®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D,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맹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 우	33조 1항 1호
○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3조 1항 1호
○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33조 1항 1호
○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3조 1항 1호
○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33조 1항 1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 부하는 경우	33조 1항 1호
○ 로열티, 물품대금, 시스템사용료, 공사견적금액, 기타 본 계약에 따라 당사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5% 이상을 연체하는 경우	33조 1항 1호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33조 1항 1호
○ 식품위생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 나 당사의 위생 점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1호
○ 원부자재의 자점사입 기타 판매금지 조항(제21조)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1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당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1호
○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1호

○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게을리 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3조 1항 1호
○ POS등의 설치(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1호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33조 1항 1호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 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33조 1항 1호
○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33조 1항 1호
○ 기타 가맹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에 따른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1호
○ 귀하가 개점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을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	33조 1항 2호
○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	33조 1항 3호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3조 2항 1호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33조 2항 2호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3조 2항 3호
0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3조 2항 4호
0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33조 2항 5호

0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33조 2항 6호
0	가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3조 2항 7호
0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 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3조 2항 8호
0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3조 2항 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 은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단사이 수이 ㅎ 가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 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 영권 이전 완료	무이·가맨사연보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금의 경우 양수인이 잔존계약기간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맹비를 당사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고 계약내용에 따라 재가맹비만 지급하면 되나,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리행사 시킬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의 사후통지 및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 를 당사에 통지 → 요 건 검토 → 승인통지 (통지받은 후 1개월 이내)	
업무위탁	불가	-		
대리행사	불가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 범위

☞귀하는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비어첸]과 동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요리를 판매하는 비어카페 형태의 주류판매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시간 영업일수	
17:00~02:00	주6일 이상, 월26일 이상	문의:가맹사업본부 (1899-5937)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합리적인 사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하기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휴업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휴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2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할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5_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당사의 정책 준수 여부, 당사가 정한 한 상품 취급 여부, 당사가 정한 필수공급품목 취급 여부, 원부재료 품질기준 준수 여부, 매장 위생 및 청결 상태, 각종 설비 관리 상태, 기타 가맹점 매뉴얼 규정 등 가맹점 운영 현황 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관리내역 점검→일지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서명 혹은 통지	월 1회 이상	관리팀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1 E	97.9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0177
	상품광고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고	상품광고+판촉활동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광고	100%	-		
	개별광고	-	100%		

※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는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2. 위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당사의 시스템, 매뉴얼, 제조, 판매, 영업, 계약 및 점포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지할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노하우 및 이들이 수록된 운영교범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2.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35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5항, 제21조 2항(자점사입)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벌로 3,000만원을,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로 2,000만원을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1,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 에 걸리는 기간, 비용
-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 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99m²(약3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5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D-4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36~48(13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35(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34(1일)	IV. 가 맹 점 사 업 자 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32~33(2일)	N.기 8 급시 급시 긔 부담 4) 번 항목 참조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2~31(30일)	, 2 3 1 1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 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이
	7101117 1112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o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o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없음 : 당사에서는 정기교육 이외에 별도로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내용 없음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점 전 교육	회사소개, 주방요리방법 ,점포운영의 노하우, 고객응대 서비스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 전일	필수
개점 후 교육	본사정책 안내, 제품 품질관리 교육, 제품 평가회 등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3 일	3,300	-
정기교육	교육기간은 당사가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지정	220	경우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여 다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1인당 11만원(부가세포함)의 교 육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숙박비.교통비 등 교육비용 이외의 제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 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u> </u>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_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_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 신청서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급	원 정)					
신	청인의 계좌							
가명	생본부의 계좌			/ 예금	급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	치기관의 귀하 지점장	장				

별첨 1_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1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VAT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1년~2023년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